

구리도시공사 정관

제정 2012. 9. 19. 정관 제1호
개정 2013. 1. 2. 정관 제2호
개정 2014. 10. 1. 정관 제3호
개정 2017. 9. 7. 정관 제4호
개정 2017. 12. 15. 정관 제5호
개정 2019. 3. 7. 정관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사는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Guri Urban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9,0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삭제 2019. 3. 7>

③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0. 1>

제5조(광고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직원 및 하부조직)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공사의 조직, 정원, 직원의 직종 및 부서별, 직급별 세부기준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③ 이 정관에 따르지 않는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과 본부장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사 업무와 관련한 담당국·단·소장
2. 세무, 회계, 법률, 경영, 행정 등의 전문가
3. 기타 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1호의 이사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임된다.
- ⑤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② 감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시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시의 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감사에 보한다.
-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 ② 직원의 임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직원의 복무) 임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9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으로 지명한 임원·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2-1.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및 건축물의 임대 및 관리 <신설 2012. 1. 2>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2.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중요사업의 신규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12.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3.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회의에 부쳐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신설 2014. 10. 1>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개정 2014. 10. 1>
5.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개정 2014. 10. 1>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40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목개정 2013. 1. 2]

제4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제44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5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

제46조 <삭제, 2013. 1. 2>

제47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8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경영평가) ① 공사는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시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의 민간위탁)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국내·외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 및 겸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53조(파견 및 겸임된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 및 겸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5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55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5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호, 2012. 9.19>

[제목개정 2013. 1.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 의 지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2호, 2013. 1.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17. 9.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호,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